

저출산고령사회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공적아동보험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田 鎬 成*

(e-mail : corsel@hanmail.net)

目 次

1. 문제제기
 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
 3.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아동기 지원
 4. 일본의 움직임
 5. 맺음말
-

1. 문제제기

2006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05년 현재 48,138천명인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8년에 49,340천명을 정점으로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2050년에는 42,343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¹⁾, 이러한 인구 감소의 주원인으로 저출산을 꼽을 수 있겠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1980년대)라는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이 1990년 이후 급격한 출산율 감소(〈표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참조)로 인한 심각한 사회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 외래교수

1) 통계청(2006년) 『장래인구추계 결과』 p.25

문제화가 염려되면서 어느 샌가 인구장려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한 국가의 존폐를 갈음하는 사회정책을 중장기적 안목이 아닌 단기적 측면에서 응급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심각한 저출산화의 주요원인으로는 유아사망률의 저하, 초혼연령의 증가와 여성의 고학력화 및 일하는 여성의 증가로 인한 출산기피, 양육비 증가와 탁아시설의 부족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저출산화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고령인구 비율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고 고령화의 주요원인이 된다. 즉, 고령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출생인구가 증감하게 되면 이는 상대적으로 고령인구의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영향으로 저출산화는 향후의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연결되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생산연령인구의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시키고, 이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하여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해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저출산화는 고령인구비율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킴과 동시에 향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생산연령인구의 사회보장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며, 또한 부양비증가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경제적 기반약화로 또다시 저출산화를 야기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정책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²⁾을 제정, 범정부적 저출산 종합대책등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여 노인건강과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하여 부담-급여체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³⁾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표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참조)를 보면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2.1명을 훨씬 밑돌고 있으며, 2008년 현재 1.19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향후에도 계속하여 증감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향후 우리사회를 젊어지고 갈 생산연령인구 후보군인 아동인구의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교육까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부의 종합적인 시책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공적 사회보험방식인 “아동보험

2) 2005년 5월18일 제정되었으며, 2008년 2월29일 일부개정되었음.

3)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7 보건복지가족백서』 p.5

제도(가칭)”의 창설 가능성을 사회보장제도적 측면에서 연구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제도는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이나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일본에서는 일부 연구자에 의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으며, 지자체인 사가현에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춘 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으로 본 연구 초기과정으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저출산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

1) 저출산고령화 현황

2006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65세이상 고령인구는 4,367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고령인구비율은 약9.1%로 집계되었다. 이는 1970년 991천명으로 3.1%에 그쳤던 고령인구비율이 2000년에는 약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7,701천명으로 14%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어 약18년이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기대수명⁴⁾ 연장과 함께 고령화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합계출산율 추이(<표2>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 총출생아수 1,007천명으로 합계출생율 4.53명에서 1990년 1.59명으로 급감하고 2005년에는 총출생아수 438천명으로 합계출생율은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1.2명, 2030년부터는 1.20명으로 추이하고 있으나 2008년 현재 합계출생율은 1.20을 기록, 획기적인 정책방안이 수립되지 않는 한 이 수치를 유지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1> 연령계층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8	2020	2026	2030	2050
0~14세	42.5	34.0	25.6	21.1	19.2	16.2	12.7	12.4	11.7	11.4	8.9
15~64세	54.4	62.2	69.3	71.7	71.7	72.9	72.9	72.0	67.5	64.4	53.0
65세+	3.1	3.8	5.1	7.2	9.1	11.0	14.3	15.6	20.8	24.3	38.2

출처: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4) 2005년 현재 78.63세(남자75.14세, 여자81.89세)이며,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2020년에는 81.5세(남자 78.0세, 여자84.7세)임.

〈표2〉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단위 : 명, 여자천명당, 천명)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합계출산율	4.53	2.83	1.59	1.47	1.08	1.15	1.20	1.28	1.28
총출생아수	1,007	865	659	637	438	434	377	348	226

출처: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표3〉 가정별 합계출산율

(단위 : 년도, 명)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중 위	1.08	1.15	1.17	1.20	1.25	1.28	1.28	1.28
고 위	1.08	1.28	1.36	1.48	1.54	1.57	1.58	1.58
저 위	1.08	0.83	0.92	0.95	0.96	0.97	0.97	0.97
현수준	1.08	1.18	1.18	1.18	1.18	1.18	1.18	1.18

출처: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2) 생산연령인구감소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일반적으로 15세에서 64세의 경제활동인구를 가리키며,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34,530천명으로 총인구의 71.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36,190천명(73.4%)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35,506천명(72.0%), 2050년에는 22,424천명으로 총인구의 53.0%에 이를 전망이다.⁵⁾

이와 같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주원인은 기술한 바와 같이 저출산에 있다고 하겠다. 생산연령인구는 유소년인구와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연령인구이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유소년인구 및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생산연령인구라는 점이다.

생산연령인구의 부양비를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총부양비는 39.4%(유소년부양비 26.8%, 노령부양비12.6%)이나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2020년

5) 통계청(2006년) 『장래인구추계 결과』 p.29

에는 38.9%(유소년부양비 17.2%, 노령부양비 21.7%), 2030년에는 55.4%(유소년부양비 17.7%, 노령부양비 37.7%), 2050년에는 88.8%(유소년부양비 16.8%, 노년부양비 72.0%)에 이를 전망이다.

〈표4〉 생산연령인구의 부양비

(단위 : %)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 부양비	83.8	60.7	44.3	39.5	39.4	37.2	38.9	55.4	88.8
유소년부양비	78.2	54.6	36.9	29.4	26.8	22.2	17.2	17.7	16.8
노년부양비	5.7	6.1	7.4	10.1	12.6	15.0	21.7	37.7	72.0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47.3	67.7	125.9	213.8	429.3

출처: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여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이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율 82.1%(남자81.1%, 여자82.9%)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하고 있는 유소년부양비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양비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유소년부양비는 한층 더 가중된다.

3.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아동기 지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할 것이다. 근년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 자녀를 출산시에 세제혜택이나 연금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앞다투어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사회보장시스템의 한 형태인 사회보험제도(가칭 아동보험제도)로서의 대응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제도란 국민 생활상의 사회적 위험요소를 공통분모로 하여 사회구성원이 그 위험에 처했을 때 현금급여나 현물급여로 생활을 보장받는 상호의존적 제도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들

5) 통계청(2009) 『2008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pp.1~2

어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을,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을, 산업재해보험제도는 산업재해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환을 그 공통분모로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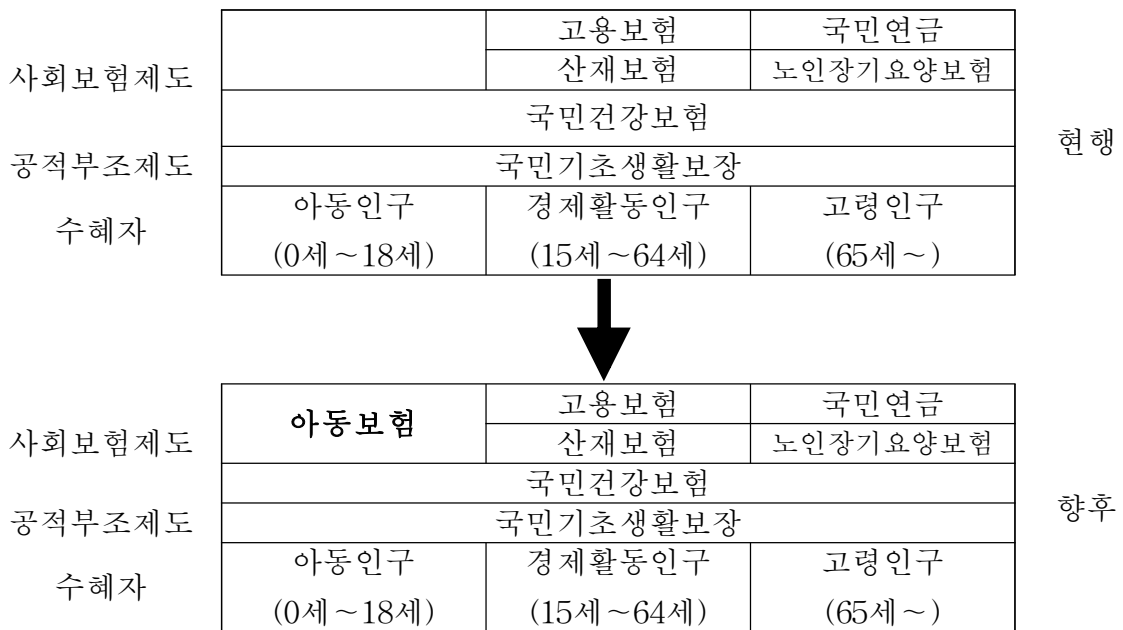
이에 아동보험제도는 향후 노동연령인구로 편입되어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책임질 아동이 출생과정이나 부모의 유무, 부모의 빈부와 상관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한 방책이라 하겠다.

어린이의 출산에서 양육과정을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한 개인이 낳아 키우는 등 성장하기까지의 경제적인 책임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한 개인이 지는 반면, 성인이 되고 나면, 사회 시스템상 사회전체의 한 일원으로써 그 사회의 모든 고령인구를 부양하게 된다.

따라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그 사회에 무임승차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는 “개인의 어린이”가 아닌 “사회의 어린이”로서 그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용보험은 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동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사회보험제도에서 제외되었던 아동층을 대상으로 하기에 전 인구가 사회보험제도에 들어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며 그 형평성 또한 확립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1 참조>

<그림1> 가칭 아동보험 성립 전후의 사회보장제도 체계 변화도



출처:필자 작성.

4. 일본의 움직임

1) 일본정부의 공식언급

2007년 6월22일 일본정부에 의해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이하, 내각결의)이 내각결의 되었다. 내각결의의 목적은 경제사회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여 ①혁신의 창조와 열린자세에 의한 성장경제 실현, ②재도전이 가능한 사회실현, 지역의 활성화 ③간소하며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을 도모, 이로써 일본의 경제사회를 관(官)주도의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자유와 규율에 지원받는 시스템으로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행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규제의 나아가야 할 길의 개혁을 적극적이고 발본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한층 더 가속시키는 데 있다.⁶⁾

이 내각결의의 중점계획 사항의 ‘6. 복지·보육·개호’항목 중, 보육의 이용자에 대한 ‘직접보조방식의 도입 등’에서 “이용자 부담의 공평화(公平化)를 위해 운영비 등의 공적보조를 현행 시설로의 보조에서 취학 전(前) 어린이를 가진 모든 가정에 대한 직접보조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이때 사회복지제도로서의 보육의 성격을 바꾸어 육아를 넓게 사회전체가 지원한다는 공조(共助)의 입장에서서 기존의 육아지원 관련 예산 등을 통합화한 것과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전환(“육아보험(가칭)”의 창설)도 같이 검토한다”⁷⁾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육아보험(가칭)”의 창설이라는 사회보험제도의 육아지원을 문언(文言)한 것으로 향후 성립 여하를 떠나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2) 사가현의 “육아보험구상” 움직임

사가현에서는 2006년 6월 ‘사가현 육아보험구상 시안’⁸⁾을 공포하였다. 육아보험구상 시안의 추진 배경으로는 저출산화의 진전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장기적인 시점에서 사회전체가 차세대 육성지원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부모만이 지는 것이 아닌, 사회일원으로 모든 국민이 그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는 “육아의 사회화”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기술한 바와 같이 육아보험구상은 사회전체가 차세대를 육성한다는 이념 아래에 세금으로 확보된 재원과 국민이 평등하게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

6) 내각부(2007)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3개년 계획』 p.1

7) 내각부(2007)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3개년 계획』 p.61, p.280

8) 2008년 6월13일에는 ‘사가현 육아보험구상 시안 Ver.6’이 공포 됨.

고 있으며, 육아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진 사회보험제도이다.

부모의 일 형태에 관계없이 육아를 지원하는 모든 어린이를 평등한 대상으로 (첫째 이념), 모든 사람이나 사업소도 지역사회에 도움과 지원을 받아 성장한다는 인식하에 어린이의 성장 그 자체에 착안하여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전체가 지원하는 구조로(둘째이념), 다양한 육아서비스의 선택지를 제공하여 육아를 지원하는 이용자 중시 지역중시의 구조로(셋째이념)를 목표로 하고 있다.⁹⁾

육아보험도입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이다. 이는 현행 아동수당의 유지와 지급대상연령 인상으로 모든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와 보육서비스의 이용료의 8할을 보험이 부담(본인부담 2할)한다는 것이다. 단,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서비스에 또 현금급여를 추가한다. 둘째, 영유아 의료비의 무료화다. 현재 각 지자체가 부담해 온 재원은 각 지자체에서 육아지원책으로 충당, 국가제도로서의 영유아 의료비의 무료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셋째, 육아휴직을 취득하기 쉽게 환경정비를 한다. 현행 육아휴직급을 5할에서 8할로 인상, 육아휴직 취득에 따른 대체직원급여의 1/3을 보조하며, 이는 아동수당 사업자 부담분을 재원으로 실현가능하다는 것이다. 넷째, 육아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다. 정부의 ‘어린이 육아 응원플랜’¹⁰⁾의 2010년도 목표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¹¹⁾

또한 육아보험도입으로 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육아·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직접계약방식에 의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육아의 사회화 실현이라는 과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¹²⁾

5. 맺음말

ㄱ씨(氏)부부는 6명의 아이가 있고, ㄴ씨(氏)부부는 3명의 아이가 있으며, ㄷ씨(氏)부부는 1명의 아이가 ㄹ씨(氏)부부는 아이가 없고, ㅁ씨(氏), ㅂ씨(氏)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못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형태의 세대가 존재하며 이 각 세대의 수입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9) http://www.pref.saga.lg.jp/at-contents/ikuji_kyoiku/kosodate/ouen/torikumi/ikujihoken.htm

10) 일본정부에 의한 차세대육성지원대책으로 ‘젊은이의 자립과 강인한 어린이로 키움,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과 일의 방향성 재검토, 생명의 중요함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 육아로 새로 지원하는 연대의 네 가지 중점과제를 내걸고 5개년 목표와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엔젤플랜, 신엔젤플랜을 잇는 대책으로 2005년 1월에 발표되었다.

11) 사가현(2008) 『사가현 육아보험구상 시안(개요판)』 p.5

12) 사가현(2008) 『사가현 육아보험구상 시안(개요판)』 p.11

생활을 하는 세대는 ㄱ씨(氏) 부부일 것이며, 그다음으로는 ㄴ씨(氏)부부, ㄷ씨(氏)부부, ㄹ씨(氏)부부, ㅁ씨(氏), ㅂ씨(氏) 순일 것이다. 반대로 가장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세대는 ㅂ씨(氏), ㅁ씨(氏) 일 것이며, 그 다음 순으로는 ㄹ씨(氏)부부, ㄷ씨(氏)부부, ㄴ씨(氏)부부, ㄱ씨(氏)부부 일 것이다. 그 이유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어린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양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역세대인 ㄱ씨(氏)부부, ㄴ씨(氏)부부, ㄷ씨(氏)부부, ㄹ씨(氏)부부, ㅁ씨(氏), ㅂ씨(氏)는 세월이 흘러 모두 고령자가 되고 나면, 차세대인 그 아이들이 현역세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령자가 된 현역세대(ㄱ씨(氏)부부, ㄴ씨(氏)부부, ㄷ씨(氏)부부, ㄹ씨(氏)부부, ㅁ씨(氏), ㅂ씨(氏)의 부양은 다른 아닌 차세대인 어린이들의 몫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예를 들어, 여기서는 ㄱ씨(氏)부부, ㄴ씨(氏)부부, ㄷ씨(氏)부부)가 키워 준 차세대 어린이가 고령세대(ㄱ씨(氏)부부, ㄴ씨(氏)부부, ㄷ씨(氏)부부를 포함한 ㄹ씨(氏)부부, ㅁ씨(氏), ㅂ씨(氏))를 부양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차세대를 담당할 어린이에 대한 부양부담을 어린이의 부모만이 짊어질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이를 낳은 이나 낳지 않은 또는 낳지 못한 이 모두가 그 어린이의 부양으로 노후 생활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화문제는 고령화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고, 생산연령인구의 사회보장부담이 증가하며, 또다시 저출산화를 야기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출산화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출산화 방지를 접근한다면, 장래 현역세대(생산연령세대) 확보를 공통분모로 아동지원을 하는 즉,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보장은 국민을 이해시키기에 충분하리라 여겨진다. 어린이가 많은 가정은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어린이가 없는 가정은 후일 노후에 그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각각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을 까 여겨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적사회보험제도로서의 아동보험(가칭) 도입을 연구·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参考文献】

1. 통계청(2009) 『2008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2.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7 보건복지가족백서』
3. 佐賀県(2008) 『佐賀県育児保険構想試案 Ver.6』
4. 佐賀県(2008) 『佐賀県育児保険構想試案(概要版)』
5. 内閣府(2007) 『規制改革推進のための3ヶ年計画』
6. 山田昌弘(2007) 『少子社会日本』、岩波新書。
7.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8. 鈴木真理子(2002) 『育児保険構想』、筒井書房。
9. http://www.pref.saga.lg.jp/at-contents/ikuji_kyoiku/kosodate/ouen/torikumi/ikujihoken.htm 2009년 4월1일 현재.

要 旨

本論は、近年国家的次元での大きな課題の一つである少子高齢化問題の根本的な解決策を見いだそうとした。国家次元で現人口を維持するには2.1の合計特殊出生率が必要であるが、韓国ではそれを遥かに下回る1.12（2008年度統計）の水準に留まっている。この数値は経済協力機構（OECD）に加入している国家のうち最下位である。アメリカ2.12、イギリス1.9、特に隣国の日本1.3よりも低い数値、非常に深刻な状態に陥っている。

児童というのは、将来の経済活動人口になる予備軍であり、一国の将来を担う大切な資源となる。その人口が減っていくというのは、社会の基盤が弱体化され、経済活動人口の社会保障負担が増加し、さらなる少子化を引き起こす、悪循環が繰り返される。このような状況が予想されるなか、韓国政府は、少子高齢化問題の解決のため、税制、年金、補助金等の政策を取り入れてはいるが、その効果はあまり上がっていない。

そこで、本論は、社会保障制度の三本柱の一つである、社会保険制度の導入を提案したものである。要するに、将来現役世帯（経済活動人口）の確保を共通分母とする児童を支援する、すなわち社会保険制度による保障は、国民を理解させるに充分であると思われる。子どもが多い家庭は、より多い受給が受けられるし、子どもが少ない家庭は、将来の老後にその恩恵を受けられ、各々の均衡性は成り立つのである。このような次元から公的社会保険制度としての児童保険（仮称）の導入を研究し、検討するに値す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 社会保障制度政策、社会保険制度、少子高齢社会、少子化、高齢化、児童保険

투 고 : 2009. 11. 30
1차 심사 : 2009. 12. 12
2차 심사 : 2010. 01. 09